
Ⅲ

향후 정책방향

- | | |
|------------------------|----|
|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 59 |
|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 62 |
|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 65 |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 강화 방안 추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한국은행은 국민의 핵심 지급결제 서비스로 자리 잡은 신속자금이체 서비스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이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23년 중 우리나라의 금융·지급결제 환경을 고려해 도입시점 및 최적의 시스템 설계방안을 포함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¹⁾ 아울러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규모 전산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하는 데다 금융기관의 일중결제유동성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

정이다. 또한 동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의 결제유동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들과 글로벌 상업은행들도 최근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간 연계 논의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²⁾ 이러한 국제 흐름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동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국가 간 연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글로벌 상호운영성 제고 및 주요국 지급결제인프라와의 연계 논의 대응을 위해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ISO 20022 체계로의 전환을 충실히 준비하고 전문체계 변경에 따른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³⁾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2028년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관련 전문을 개발하고 신규 전문을 한은금융망에 적용하기 위해 IT시스템을 개편한 후 금융기관과의 공동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참가기관 협의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참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1) 한국은행은 2022년 10월부터 금융결제원과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관련 실무 TF를 운영하고 있다.
2) 자세한 내용은 <참고 I-1> '최근 미국과 유럽의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 추진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3) ISO 20022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 결제업무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참고 III-1>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시 금융기관의 결제업무 방식 변화'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I-1. 한은금융망의 ISO 20022 도입 일정(잠정)

추진 사항	일정
핵심 자금이체 업무의 ISO 20022 전문 개발(1단계 전문 개발)	2022~2023년
증권대금동시결제(DvP)의 ISO 20022 전문 개발(2단계 전문 개발)	2023~2024년
IT시스템 개편(참가기관과의 테스트 포함)	2024~2028년
신규 ISO 20022 전문 단계별 적용 시작	2028년 중

자료: 한국은행

지정,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참가제도 개선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제완결성 보장)

한국은행은 2023년 중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오픈뱅킹공동망이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 따른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정 요건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자금융공동망과 합산해 처리되고 있는 오픈뱅킹공동망의 거래차액을 별도로 분리하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⁵⁾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 강화 방안 추진

오픈뱅킹은 핀테크업체 등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오픈 API를 통해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에 접근해 지급서비스 및 금융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금융기관들과 핀테크업체들 간의 정보공유 계약 및 시스템 접속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고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을 구축했다.

최근 핀테크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4)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서는 지정지급결제제도 지정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 일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하여 파급될 위험이 있고, 결제규모 및 이체지시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제도일 것, ② 운영기관의 운영규칙에 이체지시가 최종적이고 취소불가능해지는 시점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③ 참가자 간 원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 원화당좌예금이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없는 다른 결제자산을 이용하여 실행할 것, ④ 그 밖에 결제위험 방지대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5) 2021년 12월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학계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오픈뱅킹공동망의 시스템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표 III-2. 결제안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운영기관	시스템명	지정일시 ¹⁾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2006.8.21. 09:30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2006.8.21. 07:00
	타행환공동망	2006.8.21. 09:30
	CD/ATM공동망	2006.8.21. 07:00
	어음교환시스템	2014.1.10. 00:00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망	
	오픈뱅킹공동망	추진 중
CLS은행	CLS시스템	2006.8.21. 09:30

주: 1) 효력 발생 일시
자료: 한국은행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2023년 중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픈뱅킹공동망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게 되어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제도 개선)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한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 업체의 동 시스템 이용에 따른 안전성 및 신뢰성 하락 우려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오픈뱅킹공동망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고객이 거래은행(A)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타행(B) 계좌를 선택한 후 C은행의 고객 계좌로 자금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제3자이체), 오픈뱅킹공동망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금이체를 출금·입금이체 결합 방식(B→A→C, 2단계 구조)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업무처리 방식은 불필요한 운영리스크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동 자금이체 프로세스를 현행 2단계에서 1단계(B→C)로 단순화하는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 CBDC 도입 관련 기술적·제도적 기반 강화
- CBDC 관련 대내외 정보 교류 및 협력 확대
- ATM 활용방식 개선 추진
- QR 방식 ATM 서비스 도입 추진

CBDC 도입 관련 기술적·제도적 기반 강화

한국은행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설계모델 및 제도를 탐색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유관기관, 민간 금융기관, 관련 기업, 학계 및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실제와 유사한 다양한 환경에서 CBDC 활용 사례를 다각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CBDC 설계모델과 함께 CBDC에 기반한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 발행 방안⁶⁾ 등의 적용 가능성도 탐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BDC가 디지털 경제 하에서 화폐시스템의 준거(ancho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금융부문의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2년 하반기 중 14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실시한 CBDC 연계실험을 비은행 금융기관 및 핀테크기업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CBDC 유통 관련 시스템⁷⁾과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시스템을 연계하는 실험 실시도 고려 중에 있다.

이 외에도 CBDC 관련 기반 기술 연구를 심화할 예정이다. 2022년 중 실시한 모의실험 연구 등을 통해 개선과제로 도출된 대량거래 집중 시 처리시간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CBDC의 불법복제 및 이중지불 방지 관련 기술 연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CBDC 도입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향후 CBDC를 도입하게 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CBDC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⁸⁾ 또한 주요국의 CBDC 연구·개발 현황 및 최신 IT기술 발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한국은행의 CBDC 연구·개발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6) 토큰화 예금이 발행되는 경우 CBDC는 토큰화 예금 발행 금융기관 간 최종 결제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7) 일부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의 CBDC 연계실험과 별개로 CBDC가 이미 발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송금 및 대금결제 등에 CBDC를 이용하는 모의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8) BIS 및 7개국 중앙은행(2020.10월), G7(2021.10월)은 CBDC 도입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공표하면서 CBDC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책무 완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학계,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CBDC 도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제도 설계 등을 통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한국은행, 2022.1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CBDC 관련 대내외 정보 교류 및 협력 확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CBDC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강건한 기술적 기반 마련, 제도적 준비와 더불어 CBDC 도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유관기관, 민간 금융기관, 관련 기업 및 학계 등과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CBDC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법·제도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금융기관, IT업계, 법조계,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충실히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고서 및 책자 발간, 세미나 개최 및 유튜브 방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한국은행의 CBDC 연구·개발 경과를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CBDC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⁹⁾ 한국은행은 BIS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BIS 혁신허브에서 진행 중에 있는 CBDC를 활용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IMF 및 해외 중앙은행과 연구결과를 긴밀히 공유하

는 등 국외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ATM 활용방식 개선 추진

한국은행은 지급수단의 디지털 전환 확산에 대응해 ATM 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국민들의 현금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 ATM 활용방식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주요 지도플랫폼에 대한 ATM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ATM 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인 금융맵은 국내 지도플랫폼들과 연계해 ATM 및 은행 지점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ATM의 취급 서비스, 지점 폐쇄 예정 정보, 장애인 지원기능 등으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지도플랫폼 사업자의 참여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의 ATM 운영 부담을 낮추면서도 국민들의 현금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편의점 등 유통업체 매장에서의 현금출금¹⁰⁾ 서비스와 같은 ATM 대체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효과적인 ATM 활용방식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맵 서비스 DB, 지역별 인구, ATM 대체 인프라 현황 등을 토대로 현금 접근

9)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2> 'BIS 혁신허브의 CBDC 활용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및 <참고 III-3> 'BIS의 CBDC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유통업체 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구매금액에 현금 인출 희망 금액을 추가해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금액과 물품대금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1회/1일 10만 원 한도)하는 서비스로, 현재 CU와 이마트24에서 이용 가능하다.

성 취약지역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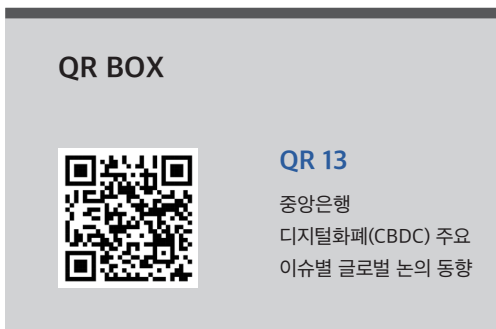
QR 방식 ATM 서비스 도입 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22년 12월 의결한 QR 코드 방식의 ATM 서비스 도입을 은행권과 함께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64

우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현금 카드 공동앱 등의 ATM 인식 방식에 기존 NFC 방식에 더해 QR 코드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기능을 API를 통해 개별 은행에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동 서비스를 개별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동 서비스 이용 가능 ATM을 은행권이 운영하는 ATM뿐만 아니라 VAN사가 운영하는 ATM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번 QR코드 방식 ATM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전 국민이 실물 현금카드 없이 모바일 기기만으로 국내 모든 ATM 현금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ATM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1) 금융앱 데이터를 이용해 금융 포용 강화를 위한 ATM 활용방식 개선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
- 지급결제시스템의 IT 운영리스크 평가체계 강화
-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 규제·감시 논의 참여
-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 참여 및 역내국과의 협력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체계 정비)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빅테크·핀테크기업은 모바일기기를 통한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간편송금, 간편결제 등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빅테크기업은 플랫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¹²⁾을 수행하고 있다. 빅테크기업은 플랫폼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및 여타 서비스 제공자와 제휴해 자신의 시스템 내에서 대 고객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빅테크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빅테크기업의 지급서비스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빅테크기업의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사건은 빅테크기업의 문제가 지급결제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시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방(오픈뱅킹)에 따른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¹³⁾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 등은 빅테크 기업에 잠재된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고 빅테크기업 자금이체 서비스의 운영복원력 확보 등을 위한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¹⁴⁾

한국은행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춰 빅테크기업에 대한 감시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빅테크기업의 지급서비스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개별 빅테크기업의 리스크 요인 및 지급결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테크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단일 기업으로서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감안해 빅테크기업에 대해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PFMI)에 따라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은 지급인과 수취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경우에 금융기관 간 지급지시의 중계,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13) 자세한 내용은 「Republic of Korea,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Technical Note, Technological change, Legal Frameworks,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Stability」(IMF, 2020.9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BIS는 중앙은행이 빅테크 기업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으로 지정해,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PFMI에 따라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PFMI를 토대로 모든 전자지급수단에 적용되는 「PISA 감시체계」(The Eurosystem oversight framework for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schemes and arrangements)를 마련했다. PISA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기업들도 유로시스템의 감시체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급결제 관련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참여)

한편,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에 지급결제 관련 정책수단을 제한적으로 부여¹⁵⁾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시 관련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¹⁶⁾으로 발의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표 III-3.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사항 비교

	양경숙 의원안	김주영 의원안
운영기준 시정요구	· 자금 및 증권결제제도 운영기준 제정권 및 시정요구권	· 자금결제제도 위험 관리기준 제정권 및 시정요구권
감시수단	· 자료제출요구권 ¹⁾ · 공동검사요구권	· 자료제출요구권 ²⁾ · 조사·현장확인권
	—	· 징계요구권 ³⁾
국회보고의무	—	· 국회보고의무

주: 1) 대상기관은 자금 및 증권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그 참가기관

2) 대상기관은 자금 및 증권결제제도 운영기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현행과 동일)

3) 시정요구, 자료제출, 조사·현장확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 한국은행

지급결제시스템의 IT 운영리스크 평가체계 강화

2022년 중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포함해 다수의 금융기관 및 빅테크기업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¹⁷⁾. 주요 사고 원인은 이들 기업의 전산 시스템 작동 오류, 전산장비 결함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시 전산장애 예방 및 대응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시 전산장애를 포함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IT부문 운영리스크 대응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리스크 및 사이버복원력¹⁸⁾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국제기구의 각국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IT부문 평가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평가 기법과 주요국의 사이버복원력 평가 방법 등을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¹⁹⁾

15) 「한국은행법」 제81조는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과 운영기준 개선요청권,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6) 양경숙 의원(2020.11월), 김주영 의원(2021.2월)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17) 2022.5월 B카드사 전산센터 정전 사고, 2022.10월 빅테크기업의 전산센터 화재 사고, 2022.11월 IT시스템 장비 및 시스템 오류로 인한 금융기관 3곳의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I-6> '2022년 중 금융권 주요 전산장애 사고 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18)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사고 피해(시스템 중단, 오류, 정보유출 등)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9) 2022년 중 CPMI-IOSCO는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을 포함한 28개국 37개 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IT부문 운영리스크 사이버복원력을 평가했으며, 한국은행은 동 평가의 평가 전문단으로 참여했다. 동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mplementation monitoring of the PFMI: Level 3 assessmen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Cyber Resilience」(CPMI-IOSCO, 2022.11)을 참조하기 바란다.

스태이블코인 등 암호자산 규제·감시 논의 참여

2022년에 이어 2023년 중에도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이 스태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감시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노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건전한 민간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지급결제의 신뢰성 및 금융안정·통화정책 측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암호자산 규제·감시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²⁰⁾

한편 최근 일부에서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감독당국이 불법거래 방지와 관련한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지급결제의 신뢰성,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일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 참여 및 역내국과의 협력 강화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G20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이 실제 개인과 기업의 국외 송금 시 수수료 인하와 처리속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실무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IS CPMI는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의 지배구조 및 감시체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2023년 중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간 지급 개선과 관련해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또는 참가기관 확대를 고려 중인 국가들을 위해 BIS, 각국 중앙은행 및 관련 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거래은행, 핀테크 등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G20 회원국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함께 국가 간 지급 수수료, 처리 속도 등 개선 목표 이행 정도와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2023년부터 매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BIS CPMI 회원으로서 해당 글로벌 논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은행 및 핀테크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0)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5>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BIS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FMI에 대한 규제·감시 등 공동의 이슈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를 운영 중이다. 한국은행은 동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한 재무자원 확충을 통한 복원력 강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협조 감시 방안 논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한편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BIS CPMI-IOSCO는 2013년부터 26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행점검 상설그룹²¹⁾을 설립하였으며, 한국은행도 동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이행점검 상설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과 G20 국가 간 지급 개선²²⁾ 우선 추진에 따라 PFMI 2단계 이행평가²³⁾를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평가가 2025년 실시될 예정이었던 만큼 평가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에서는 국가별 지급결제 동향 및 제도 개선 상황,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감시·감독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 역내국의 경우 우리나라

와 경제문화 교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감시 경험을 공유하고 지급결제제도 개선 촉진자로서의 각종 경험과 노하우를 역내 중앙은행과 교류할 계획이다.

21) CPMI-IOSCO 운영위원회가 원활한 PFMI 이행점검을 위해 운영 중이며,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자세한 내용은 <참고 1-5>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이행상황 평가지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CPMI-IOSCO는 26개 회원국 중 매년 2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체계의 세부내용과 PFMI와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참고 III-1.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시 금융기관의 결제업무 방식 변화

지급결제시스템의 ISO 20022 도입을 위해서는 신규 전문을 개발·변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전문 흐름을 ISO 20022 표준이 전제로 하는 전문 흐름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¹⁾ 전문 흐름의 변경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업무수행 방식 변경을 초래하므로 ISO 20022 도입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참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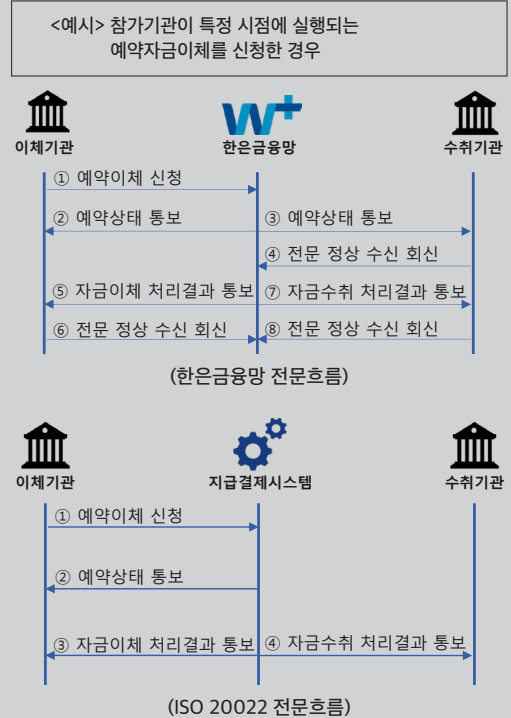
예를 들어,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에게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이체 대기, 예약 및 대기·예약 취소 관련 전문을 이체기관과 수취 예정기관에게 통보하고 있다. 반면 ISO 20022 체계에서는 효율성과 간결성을 중시해 자금이체 대기 관련 전문을 수취 예정기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또한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의 전문을 수신한 기관이 해당 전문의 정상 수신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SO 20022 체계에서는 전문 수신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게 관련 전문의 정상 수신 여부를 회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은금융망의 ISO 20022 도입 과정에서 관련 업무처리 방식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참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 전문흐름과 ISO 20022 전문흐름 차이(예시)



자료: 한국은행

한편 ISO 20022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체업무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 항목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ISO 20022를 기 도입한 주요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금이체 프로세스 고유번호(UETR)²⁾ 항목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한은금융망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 식별 코드(BIC, LEI), 최종 지급인과 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 등 세부항목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1) 만일 현행 한은금융망에서만 이용되는 전문 흐름을 ISO 20022 체계에서도 이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ISO 20022 전문 등록기관인 SWIFT와 협의해 신규 전문을 등록해야 한다.
2) UETR은 Unique End-to-end Transaction Reference의 약자로, 최초 지급지시기관부터 최종 수취기관까지의 자금이체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전문에 공통되는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현재 한은금융망은 하나의 자금이체 프로세스에 대해 이체지시, 수취지시 및 결과 통보 등 개별 전문 단위별로 고유번호(전문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UETR을 수용하더라도 현행 한은금융망의 전문 고유번호 체계는 그대로 사용될 계획이다.

참고 III-2.

BIS 혁신허브의 CBDC 활용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¹⁾)는 각국 중앙은행 등과 협력해 CBDC를 활용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²⁾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mBridge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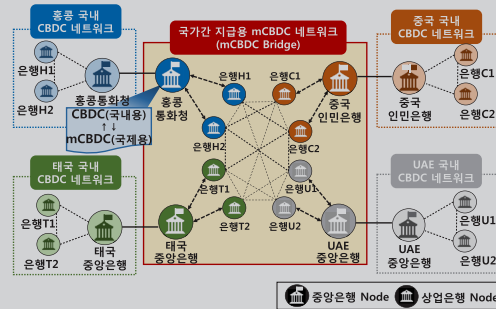
2021년 2월 BIS 혁신허브 홍콩센터는 홍콩, 태국, 중국, UAE 중앙은행과 함께 mBridge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한국은행은 동 프로젝트의 참관회원으로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³⁾

mBridge 프로젝트에서는 기술, 법률, 정책, 비즈니스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가 이미 개발한 솔루션을 활용하는 타 프로젝트와 달리 중앙은행들이 CBDC 플랫폼을 자체 구현해 참여국 상업은행들과 공동으로 6주간 164건, 2,200만 달러 규모의 외화자금 거래 실험을 진행했다. BIS 혁신허브 홍콩센터는 관련 연구 결과를 2022년 10월 공개했다.

동 프로젝트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단일 플랫폼⁴⁾(mBridge 플랫폼) 구축 방

안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은 mBridge 플랫폼에서 상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자국 dCBDC와 mBridge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mCBDC를 1:1로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상업은행은 자국 중앙은행 mBridge 플랫폼 접근이 가능하며 mCBDC를 이용한 24시간 국가 간 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mBridge 플랫폼 구조



자료: BIS 혁신허브 홍콩센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참가은행 간 24시간 환전 및 실시간 국외 송금이 가능해져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은행은 모든 외환 거래와 국외 송금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시장의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다.

mBridge 프로젝트는 향후 보안, 거래 기밀성 확보 등의 기술적 이슈와 함께 외환거래 관련 제도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은행도 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1) BIS가 금융분야 혁신에 대한 효율적 연구 수행을 위해 2019년 설립했으며 현재 유로시스템, 홍콩, 런던, 북유럽, 싱가포르, 스위스 센터 등 총 6개 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조만간 토론토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 2) 2020년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협력과제로 선정하고 BIS, FSB 등 국제기구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기구들이 도출한 총 19가지 세부과제 중 CBDC 설계 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 3) 한국은행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스웨덴 중앙은행 및 BIS 혁신허브 유럽 센터, 뉴욕연준 등이 참관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 4) 동 플랫폼은 국가별 CBDC 네트워크와 별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Dunbar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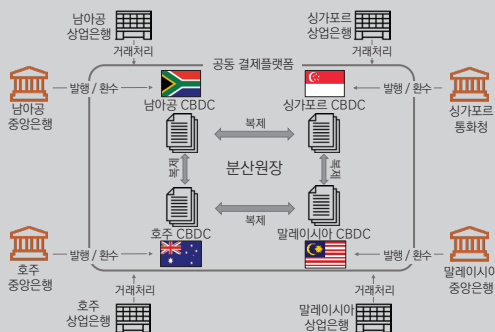
2021년 9월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는 호주,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 공동으로 Dunbar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동 프로젝트는 국가 간 지급용 복수통화 CBDC가 유통되는 단일 플랫폼⁵⁾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 관련 기술적, 제도적 이슈와 플랫폼 설계 및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등을 수록한 보고서를 2022년 3월 발표했다.

Dunbar 플랫폼은 각국 중앙은행이 참여해 자국통화 CBDC의 발행·환수 기능을 수행하고 참가 상업은행들은 발행된 CBDC를 보유하면서 다른 참가은행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참가은행들은 자국 CBDC뿐만 아니라 여타 참가국이 발행한 CBDC도 보유·송금할 수 있도록 해 환거래 은행의 개입 없는 국가 간 송금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한편, 특정 국가의 CBDC를 역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지급에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 프로젝트에서는 자금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결제절차로 분류해 중앙은행 간 합의된 공통의 규제정책을 적용하는 한편,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등 자금이동과 관련된 리스크관리 업무는 비결제절차로 분류해 각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소재한 국가의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다른 나라의 CBDC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는 반면 지급처리는 CBDC 발행국 소재 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는 기존 참가국 중앙은행 및 참가 희망 중앙은행들과 후속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은행도 동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Dunbar 플랫폼 구조



자료: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5) 동 프로젝트에서는 R3社 및 Partior社의 솔루션을 사용했다.

참고 III-3.

BIS의 CBDC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는 2023년 1월 현재 6개 핵심분야¹⁾ 관련 총 26개 프로젝트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CBDC 분야에 가장 많은 총 11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BIS 혁신허브의 CBDC 관련 프로젝트는 국내 및 국가 간 지급은 물론 CBDC의 상호운영성, 사이버 보안, 오프라인 지급, 민간 기관과의 공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BIS 혁신허브 CBDC 관련 프로젝트¹⁾

용도	프로젝트명	수행 주체	종료시기
국내	Helvetia	- BIS 혁신허브 스위스센터 - 스위스 중앙은행 - 스위스 증권거래소	2022.1월
	Polaris	- BIS 혁신허브 북유럽센터	진행중
	Rosalind	- BIS 혁신허브 런던센터 - 영란은행	진행중
	Sela	- BIS 혁신허브 홍콩센터 - 홍콩통화청 - 이스라엘 중앙은행	진행중
	Tourbillion	- BIS 혁신허브 스위스센터	진행중
국가 간	Jura	- BIS 혁신허브 스위스센터 - 프랑스 중앙은행 - 스위스 중앙은행	2021.12월
	Icebreaker	- BIS 혁신허브 북유럽센터 - 이스라엘 중앙은행 - 노르웨이 중앙은행 - 스웨덴 중앙은행	2023.3월
	Mariana	- BIS 혁신허브 3개 센터 (스위스, 싱가포르, 유로시스템 센터) - 싱가포르통화청 - 프랑스 중앙은행 - 스위스 중앙은행	진행중

주: 1) Aurum, mBridge, Dunbar 프로젝트 관련 사항은 <참고 I-3> 및 <참고 III-2>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내 지급용 CBDC 프로젝트

(Helvetia 프로젝트 : 2022년 1월 종료)

BIS 혁신허브 스위스센터는 스위스 중앙은행 및 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CBDC를 토큰화된 금융상품의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CBDC를 증권대금동시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증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제도적 이슈들을 점검했다.

(Polaris 프로젝트 : 진행중)

BIS 혁신허브 북유럽센터는 오프라인 CBDC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통신이 단절된 환경에서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프라인 CBDC의 기술적, 제도적 고려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osalind 프로젝트 : 진행중)

BIS 혁신허브 런던센터와 영란은행이 공동으로 중앙은행의 CBDC 원장과 중개기관 시스템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연계하는 시범모형을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1단계 연구(2022.7~2023.1월)를 통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기본 기능을 점검했으며, 2단계 연구 (2023.2~4월)에서는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와의 상호운영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CBDC의 활용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1) BIS 혁신허브가 설정한 6개 핵심분야는 Open finance, Suptech/Regtech, Green finance, Cyber security, CBDC, Next-generation FMI이다.

(Sela 프로젝트 : 진행중)

BIS 혁신허브 홍콩센터가 홍콩통화청 및 이스라엘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진행중인 CBDC 보안 관련 프로젝트이다. BIS 혁신허브 홍콩센터가 진행한 Aurum 프로젝트와 같이 2계층 구조하에서 다양한 중개기관이 CBDC 유통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

(Tourbillion 프로젝트 : 진행중)

BIS 혁신허브 스위스센터가 CBDC의 사이버 복원력, 확장성, 프라이버시 등 CBDC 핵심요소들의 향상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충관계²⁾를 나타내는 경향이 높는데 관련 기술들을 새롭게 조합·적용함으로써 최적의 CBDC 시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간 지급용 CBDC 프로젝트**(Project Jura : 2021년 12월 종료)**

BIS 혁신허브 스위스센터가 프랑스 중앙은행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이다. CBDC를 이용해 토큰화된 금융상품을 동시결제하거나 이중 통화 거래를 동시결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외 금융기관이 자국의 CBDC를 보유하는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Project Icebreaker : 2023년 3월 종료)

BIS 혁신허브 북유럽센터가 이스라엘 중앙은행, 노르웨이 중앙은행, 스웨덴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이다. 참여 국가의 모의 CBDC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허브를 구축하고 최종 이용자들이 기존 환거래은행 중심의 국가 간 지급에 비해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국가 간 송금을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Project Mariana : 진행중)

BIS 혁신허브 3개 센터(스위스, 싱가포르, 유로시스템)와 싱가포르통화청, 프랑스 중앙은행 및 스위스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이다. 탈중앙화금융(DeFi)의 일종인 암호자산거래소의 자동시장조성자(AMM) 알고리즘³⁾을 국가 간 지급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다. 별도의 환거래은행이나 시장조성자 없이 자동시장조성자를 통해 서로 다른 통화 간 교환 가격 결정 및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점검 중에 있다.

QR BOX**QR 14**

지급결제 측면에서 본
암호자산 거래소 운영 구조
및 시사점

- 2)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은 확장성을 제약하고, 프라이버시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경우 자금세탁 등이 용이해진다.
- 3) 자동시장조성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 정보·동향자료 - 업무정보'에 수록된 「지급결제 측면에서 본 암호자산 거래소 운영 구조 및 시사점」(2023.1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III-4.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의 리스크 요인 및 규제 필요성

암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를 지급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준비자산 보유 등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일반 암호자산을 기존 지급서비스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암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및 규제 공백에 따라 암호자산 지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암호자산 지급서비스의 리스크 요인

암호자산 지급서비스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암호자산은 현금, 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아 소비자들이 지급수단으로 선택할 유인이 적다. 따라서 동 서비스는 고객 유치에 위해 대고객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과거 머지플러스 사태¹⁾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감독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 업자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암호자산 지급서비스 제공업자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다.

가치가 불안정한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란은행은 지급수단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급수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와 연계된 시스템으로 스트레스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022.7월)²⁾

한편 암호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 및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암호자산 지급서비스가 통화정책의 유효성, 통화주권 등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빅테크 등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동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수용될 경우 더욱 커질 수 있다.³⁾ 이와 관련해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민간 발행 암호자산이 통화 간 경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복수통화체제로의 회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⁴⁾

1)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를 액면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오다가 적자가 누적되자 포인트 판매 및 환불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약 56만 명의 피해자와 1,004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용자 751억, 제휴사 53억)이 발생했다(2021.8월).

2) 자세한 내용은 「Some lessons from the Crypto Winter - speech by Sir Jon Cunliffe」(Bank of England, 2022.7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EU) 2019/1937, 2022.10월)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다(“It is, however, possible that a subset of crypto-assets which aim to stabilise their price in relation to a specific asset or a basket of assets could be widely adopted by retail holders. Such a development could raise additional challenges to financial stability, smooth operation of payment systems,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or monetary sovereignty.”).

4) 자세한 내용은 「President’s Message: Importance of Studying Innovations in Payment Technologies」(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Annual Report 2021)을 참조하기 바란다.

암호자산 지급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

이처럼 암호자산 지급서비스에 내재하는 각종 리스크를 고려할 때 동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체계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과 민간 전문가, 업계 등이 논의해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에 관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급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암호자산은 준비자산에 의해 가치의 안정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암호자산은 투자 대상 또는 특정 플랫폼에서의 제한적인 용도로 이용될 수 있으나 범용성을 갖춘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유럽연합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암호자산시장 법률안에서도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암호자산을 준비자산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암호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국제 규제 권고안」⁵⁾을 발표하면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를 강조했다. 동 보고서는 특히 지급수단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암호자산의 경우 여타 암호

자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8월 출범한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규제체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관련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자세한 내용은 「International Regulation of Crypto-asset Activities - A proposed framework」(FSB, 2022.10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III-5.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국내 암호자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암호자산 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수용될 경우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책자¹⁾를 발간했다. 이하에서는 동 책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

암호자산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 다른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암호자산은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해 저장되고 이전되는 전자적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증권적 성질을 갖는 암호자산(증권형 토큰)은 암호자산 특별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CBDC는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화폐발행 및 통화정책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암호자산 규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

암호자산 서비스 종류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록제도 등의 진입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본금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험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진입규제(발행자 제한 등)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최저자본금 규제를 적용하고 적격 준비자산을 적정 수준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

영업행위 규제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거래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고객자산의 분리 보관, 준비자산 관리, 암호자산거래소의 겸영 금지 등의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수단이 아닌 지급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이자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

암호자산 발행자에 대해 백서 발간,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백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암호자산 발행자가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ICO)하는 방식의 자

1) 자세한 내용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한국은행, 2022.1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금조달을 금지하고 암호자산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도 고려할 수 있다.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에 대한 설명의무(준비자산 종류·평가방법, 암호자산 이용자의 권리내용 등)를 강화하고 적합성 원칙²⁾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해 상환청구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스테이블코인만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암호자산은 일정규모(이용자 수, 거래건수·금액 등) 이하의 거래에서 제한적으로 지급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감독 및 감시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이 담당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감시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주요 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PFMI) 및 「한국은행법」 체계에 따라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

장래 지급수단으로의 이용이 확산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별도의 시스템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의 화폐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통화주권의 약화 및 통화정책 효과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코인런(coin run) 발생 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며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반 암호자산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관계당국의 인가를 취득한 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인가를 거부하거나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영란은행이, 그 외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금융감독청(FCA)이 규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암호자산에 비해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는 물론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규제를 보다 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준비자산 요건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법 적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규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합한 금융상품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QR BOX



QR 15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